

#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6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9월 2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, 대여자금 및 임대 지원금의 연체이자율을 형평성있게 조정하여 자활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기금의 설치·운용이 의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.(안 제2조의2)
- 나. 현행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로 조정함.(안 제8조제3항, 제9조의2제4항)
- 다.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 및 준용 규정의 인용법령을 현행화함.  
(안 제10조, 제1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8.26. ~ 2021.9.15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 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 평가서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삭제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”를 “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4항 중 “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”를 “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립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② 「지방회계법」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제12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</b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&lt;삭 제&gt;</b></p>
<p><b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b>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</b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9조의2(전세점포 임대 지원)</b>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</p>	<p><b>제9조의2(전세점포 임대 지원)</b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여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          되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          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        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<b>제10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</b> 구청장          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         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        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운영관 : 주민복지국장</li> <li>2. 기금분임운영관 : 자립지원과장</li> <li>3. 기금재무관 : 기획재정국장</li> <li>4. 기금분임재무관 : 재무과장</li> <li>5. 기금출납원 : 지출담당팀장</li> </ol> <p>② 삭제</p> <p>③ 「지방회계법」 중 징수관에 관          한 규정은 기금운영관 및 기금분          임운영관에게, 재무관에 관한 규          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          관에게,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          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	<p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기금  <b>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        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</b>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0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</b> 구청장          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          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은 자립지          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          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 <p>② 「지방회계법」 중 재무관과 징          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          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        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          용한다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12조(준용)</b>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12조(준용)</b>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----- -----.</p>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4조(기금의 지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